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7. 9. 14.(목) 10: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이효성 위 원 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4인)

4. 불참위원 : 고삼석 상임위원 (1인)

5. 회의내용

① 성원보고

② 국기에 대한 경례

③ 개회선언

④ 회의공개 여부 결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

⑤ 의결사항

가. 한국디엠비(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17-32-173)

-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에 따라 (주)음니네트웍스가 신청한 한국디엠비(주)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변경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승인조건을 부과하고, 그 이행결과를 향후 한국디엠비(주)의 재허가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TV홈쇼핑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32-174~180)

- o (주)지에스홈쇼핑, (주)씨제이오쇼핑, (주)우리홈쇼핑, (주)현대홈쇼핑, (주)홈앤쇼핑, (주)엔에스쇼핑, (주)공영홈쇼핑 등 피심인(TV홈쇼핑 7개사)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등을 김동철 방송기반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 피심인 7개 TV홈쇼핑사업자들이 상품판매방송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정조치를 명하고,

법인명	시정명령	
	조치유형	세부 조치사항
(주)지에스홈쇼핑, (주)현대홈쇼핑, (주)씨제이오쇼핑, (주)우리홈쇼핑, (주)엔에스쇼핑, (주)홈앤쇼핑, (주)공영홈쇼핑	①금지행위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직매입하거나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에 대한 사전 영상 제작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중지 o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
	②시정조치 명령 받은 사실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방송 채널을 통해 3회 이상 자막으로 고지하며 각 사의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
	③이행 계획 및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3개월 이내 이행계획 제출 및 공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

※(관련법)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 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위반사항) 직매입상품의 경우 납품업체는 상품판매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사전영상제작비를 부담할 유인이 적고, 홈쇼핑사가 상표권을 소유한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생산과정을 TV홈쇼핑사가 주도하고 있어 홈쇼핑사의 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작비 부담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합의로 보기 어려워 부당한 제작비 전가행위에 해당되어 방송법 제85조의2제1항7호를 위반함.

- 또한, (주)씨제이오쇼핑이 사실조사 기간 중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원안대로 의결함

※(관련법) 방송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방통위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19의2호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위반사항) 사전영상제작 비용과 관련해 10여 차례 이상 관련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상표권 관련 자료도 두 차례에 걸쳐 축소 제출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1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

㉟ 기 타

가.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회의는 9월 22일(목)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1:12)